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합200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김지수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D는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E은 별지 목록 7, 8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2. 3. 8. 접수 제6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2.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D가 있으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20. 10.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증서 2020년 제3914호로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7, 8 기재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이하 ‘1차 유증’이라 한다), 2021. 4. 2.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2021년 제990호로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6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유증’이라 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한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22. 3. 3.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2. 2.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증은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의미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10, 11, 14,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6. 10. 11. 치매로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20. 5. 10. 뇌경색이 발생하여 우측 편마비, 한쪽 청력소실 등이 발생한 점, ② 망인이 2016. 10. 27., 2017. 11. 13. H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 하나로 평가하고, 5단계에 가까울수록 심한 치매에 해당한다)은 2점(중등도) 소견을 보였고, 2018. 5. 4. GDS(전반적 퇴화 척도) 7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중등도의 인지 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보였으며, 2020. 6. 25. 충남대학교병원의 GDS 검사 결과 5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중증의 인지 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③ 망인이 2019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2022. 1. 26.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중등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대화의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유증 당시 그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치매로 인한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법률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② 한편, 망인이 2020. 7. 11. K병원에서 GDS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18. 5. 4.과 동일한 4단계에 해당하는 중등도의 인지 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보였는데, 중등도의 인지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혼동이 심해진 단계로 주의 깊게 면담할 때 분명한 인지장애가 관찰됨. 그러나 대개 시간이나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잘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는 것, 익숙한 길 다니기 영역에서는 장애가 없음’ 상태라고 하는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1차 유증 무렵인 2020. 10. 23.부터 2020. 10. 30.까지의 간호기록지에 ‘간헐적으로 엉뚱한 말 하는 모습이며 의사소통 잘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 당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청력소실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④ 망인이 2차 유증 당시 공증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이나, 피고 D와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증여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유증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던 I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물어보는 것에 직접 대답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 같았다.’고 하였다.

⑤ 망인의 대부업, 부동산 관련 업무를 몇 차례 함께 해본 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20. 7.경, 2021. 4.경 망인을 만났고, 약간 어눌해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대화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였고,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⑥ 이 사건 유증 당시 망인을 담당하였던 주치의 L은 ‘망인이 인공와우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신 분으로 입원 당시부터 청력저하가 있으셨으나 간단한 대화 및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심현우, 판사 허인성

별지 목록

1. 충청남도 논산시 전 2338.2㎡
2. 충청남도 논산시 대 500㎡
3. 충청남도 논산시 전 326㎡
4. 충청남도 논산시 대 500㎡
5. 충청남도 논산시 대 167.0㎡
6. 충청남도 논산시 전 527.0㎡
7. 충청남도 논산시 잡종지 975㎡
8. 충청남도 논산시 대 825㎡

